

의안번호	제 568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2월 1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6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2월 1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조례의 상위법이 폐지되어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제명 “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” → “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”
- “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” → 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”(안 제1조)
- “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” → “충청북도기업진흥원”  
(안 제1조 및 제3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”를 “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”를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22”로, “같은 법 시행령 제62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”로, “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”을 “충청북도기업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”을 “충청북도기업진흥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중소기업·소상공인”을 “중소기업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5호 중 “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”을 “충청북도기업진흥원”으로 한다

②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라목 중 “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”을 “충청북도기업진흥원”으로 한다.

③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”을 “충청북도기업진흥원”으로 한다.

④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9호 중 “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”을 “충청북도기업진흥원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</u>」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<u>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</u>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생략</p> <p>1. 생략</p> <p>2. “<u>소상공인</u>”이란 「<u>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</u>」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사업) ① <u>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</u>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~4. 생략</p> <p>5. <u>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애로상담 및 컨설팅 지원 사업</u></p> <p>6~10. 생략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 제62조의2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에 ----- <u>충청북도기업진흥원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생략</p> <p>1. 생략</p> <p>2. &lt;삭제&gt;</p> <p>제3조(사업) ① <u>충청북도기업진흥원</u>은 ----- -----.</p> <p>1~4. 생략</p> <p>5. <u>중소기업의</u>----- -----</p> <p>6~10. 생략</p>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민법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,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제40조(사단법인의 정관)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~ 7.(생략)

제43조(재단법인의 정관)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산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제45조(재단법인의 정관변경)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.

### 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
제4조(설립허가)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.

1. ~ 2. (생략)
  3. 다른 법인과 같은 같은 명칭이 명칭이 아닐 것
- ② (생략)

제6조(정관 변경허가의 신청 등) ① 생략

② 주무관청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,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 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
제62조의22(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)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## 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4조의31(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종합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각종 산업·금융·경영·산업기술·무역 정보 등의 제공
2.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 실시
3.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
4.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
5.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 운영
6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인정한 사업

② 시·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·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□ 중소기업기본법

제2의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“중소기업시책”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

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

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4. 삭제

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과 중기업(中企業)으로 구분한다.

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·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.

## 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